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8. 31.(금 / 총 2매(본문2))</b>	
<b>담당 부서</b>	건설안전과	<b>담당자</b>	과장 고용석, 사무관 박춘목 ☎ (044) 201-3573, 3579
<b>보 도 일 시</b>		2018년 9월 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·안전관리 실태 점검 가설구조물 안전성·품질시험 이행 실태·관리자 배치 여부 중점 확인

-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 중에 있으며, 이와 연계하여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
- 합동 점검반은 올해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 및 민간의 전문가\* 등으로 구성된다.
  - \*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건설품질협회 등
-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(시험)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,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,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.

- 특히, 건설업자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에 따라 가설구조물\*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.

\* 높이 31m 이상 비계,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,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, 터널 지보공,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,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등

- 점검 결과,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, 공사 중지,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.

-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이번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하여 규정 위반사항은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.

-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공사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불시점검도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.

-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“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.”라며, “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춘목 사무관(☎ 044-201-35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